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80
----------	------

2024년 5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년 4월 3일  
다. 회부일 : 2024년 4월 8일  
라. 상정일 :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4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이동률)

### 가. 제안이유

- 후생복지 제도 현행화 및 불분명한 용어·표현 재정비로 조례상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와 중복적인 시행규칙을 조례로 통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나. 주요내용

-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범위 현행화(안 제6조)

-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범위 현행화(안 제6조)
-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용어·표현 재정비(안 제7조 및 제9조)
-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7조)
-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를 조례에 신설·통합하여 위원회 조항 재정비(안 제9조~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2. 15. ~ 3. 6.)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가.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범위 등 후생복지 제도를 현행화하고(안 제6조), 시행규칙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을 조례로 통합하는(안 제9조~제11조)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 관련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분산 규정된 후생복지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에 통합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적용 및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에서는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편의시설(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카페, 자동판매기), 건강관리시설(부속의료기관,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센터) 및 여가휴양시설(수련원, 연수원, 콘도)을 운영하고 있음.

[ 후생복지시설 운영 현황 ]

종류	후생복지시설	설치시기	기능	운영형태
편의시설 (제6조제1호)	휴게실	(본 관) 2012	시청사 직원 대상	직영
		(서소문) 2013	휴게 공간 제공	
	구내식당	(본 관) 2012	시청사 직원 대상	직영
		(서소문) 1997	식사제공(간식, 중식, 석식)	직영
	매점	(본 관) 2012	다과 및 사무용품 등 판매	직영
		(서소문) 1980		입점업체와 계약
카페 (조례 현행화)	(다 락) 2013	시청사 직원 대상 간편식	직영	
	(마 루) 2020	제공(제조음료 및 디저트)	직영	
자동판매기 (조례 현행화)		2003	시청사 및 인근 시민 이용공간 내 음료판매	위탁
건강관리시설 (제6조제2호)	부속의료기관	(의무실) 1966 (치 과) 1997 (한의원) 2013	진료 및 상담, 예방접종, 치과치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직영

		(물리치료실) 2022		
	체력단련실	(본 청) 2012 (서소문) 2006	운동장비, GX프로그램, 재활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직영
	심리상담센터 (조례 현행화)	(본 청) 2016 (서소문) 2013	심리상담 및 검사, 심리 완화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위탁
여가휴양시설 (제6조제3호)	수련원	(속 초) 1997	- 세미나, 워크숍 - 여가선용 및 휴양	직영
	연수원	(서 천) 2007 (수안보) 2008	-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 - 여가선용 및 휴양	민간위탁
		(제 주) 2022 (경주·통영) 2024		임차
	콘도	2004	- 직원 휴양시설 제공	회원제(38구좌), 등기제(222구좌)

## 나. 세부 내용 검토

### 1) 후생복지시설 현행화(안 제6조)

- 안 제6조는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후생복지시설(카페, 자동판매기, 심리상담센터)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 예산의 범위----- ----- -----.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1. ----- 휴게실·구내식당·매점·카페·자동판매기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치과진료실·체력단련실	2. ----- 부속 의료기관·체력단련실·심리상담센터
3. 생략	3. 생략

- 다만, 현행화 대상 시설은 모두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시설들로 장기간 조례에 반영이 안되고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바, 적기 조례 정비를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초 설치시기 : 카페 2013년, 자동판매기 2003년, 심리상담센터 2013년

## 2) 주거안정 지원사업 범위 명확화(안 제7조제7호)

- 안 제7조제7호는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비하여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u>직원</u>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u>시청매점</u>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6. 생략</p> <p>7. <u>직원</u>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p> <p>가. <u>직원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u></p> <p>나. <u>주택 전세금의 융자</u></p> <p>8.~14. 생략</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u>소속공무원</u> ----- ----- ----- ----- --- <u>매점</u>----- -----.</p> <p>1.~6. 생략</p> <p>7. <u>소속공무원</u>----- -----</p> <p>가. <u>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관리, 수리 등</u></p> <p>나. <u>주택 임차보증금의 융자 및 이자 지원 등</u></p> <p>8.~15. 생략</p>

- 공무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고 1억원에 대해 연 최대 3%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올해 신규 사업인 바, 타 사업 등과의 중복 지원 방지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신규사업 추진 시 미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무주택 공무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개요 ]

※ 행정국 후생복지 방침서 발취

- 지원대상 : 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소방직, 시립대 교원 제외)
  - ※ 서울시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공고시기 : 연 2회 (4월, 8월) ※ 횟수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1인당 최고 1억원에 대해 연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서울·경기·인천 소재 주택보증금 5억 6천만원 이하 주택(하반기 변동될 수 있음)
  - 임차보증금의 50% 이내, 최대 1억원 전세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
    - ※ 보증금 5천만원 이하는 전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최대 5천만원에 대해 지원
    - ※ 본인 의무부담 금리 최소 1%, 이자율 및 지원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그룹별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선정(일반 40%, 신혼 30%, 신규 20%, 다자녀 및 1인가구 5%)
  - 개별적으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심사 진행 후 최종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 '24년 사업비 : 480백만원

### 3) 예방접종 지원사업 근거 신설(안 제7조제15호)

- 안 제7조제15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속공무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u>직원</u>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u>시청매점</u> 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14. 생략 <u>&lt;신 설&gt;</u>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u>소속공무원</u> ----- ----- ----- --- <u>매점</u> ----- ----- 1.~14. 생략 <u>15.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u>

#### [ 직원 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

※ 행정국 후생복지 방침서 발취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속 공무원, 시의원, 공공안전관, 공무직 등  
※ 전 직원 14,967명(소방직 제외), 50세 이상 직원 4,814명('23.6.30. 기준)
- 지원일정 : '24. 2.1. ~ 12.31.
- 예약방법 : 서울시 후생복지포털을 통한 선착순 예약
- 지원기준

구 분	대상포진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1,000명 (50세 이상 직원 20%)	600명 (전 직원 4%)	10,402명 (전 직원 70%)
백신단가*	88,000원	83,000원	10,000원
지원금액	50,000원 (백신 단가 56%)	45,000원 (백신 단가 54%)	10,000원 (백신 단가 100%)
신청방법	매주 금요일, 다음 주간 예약		실·국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접종시기	'24.2.1.~	'24.2.1.~	'24.10.~12.

\*백신 단가는 '24년 계약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4년 예산 : 181백만원

- 최근 3년간 예방접종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이후 총 1만 3천 5백여명이 대상포진, 폐렴구균, 독감 등의 예방접종을 받았음.

[ 최근 3년간(2022~2024.3월) 예방접종 지원사업 운영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대상포진	폐렴구균	독감	A형간염	B형간염	인유두종	파상풍백일해(Tdap)	파상풍(Td)
계	13,518	1,090	818	10,398	315	400	191	142	164
'24.3월	542	245	147	0	51	49	21	15	14
'23	7,965	798	606	5,943	155	182	82	81	118
'22	5,011	47	65	4,455	109	169	88	46	32

- 동 내용은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4)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8조~제11조)**

- 안 제8조~제11조는 조례와 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조례로 통합하고, 관련 준용규정을 명시하는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 규정사항: 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위원장, 임기 등

현행 규칙 규정사항: 부위원장, 위원회 소집, 회의 정족수 등

현행	개정안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운영을 ----- -----.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 -----.

1. (생략)
  2. 제6조에서 다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다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  
-----
  3. 제7조에 -----  
-----
  4. -----  
-----
- 사항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신 설>

<신 설>

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

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 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규칙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통합하면서 위원대상(공무원→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및 위원 연임규정(계속 연임→2회로 제한)을 변경하고, 위원 해촉 및 제척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운영 관련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각각 준용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 안 제8조의 제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 “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4호1)에 따라 약칭을 사용함.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4.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개정 전·후 비교 ]

구분	현행	개정
위원 위촉 주체	위원장	시장
위원대상 추가	공무원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위원 연임	계속 연임 가능	두 차례만 연임 가능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규정 없음	규정 신설
위원회 운영 준용규정	규정 없음	준용규정 신설
수당 및 여비지급 준용규정	규정 없음	준용규정 신설

○ 다만, 외부 민간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바, 심의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 수를 별도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총 9명 중 외부위원(공인회계사, 교수, 노무법인 부대표 등) 5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5) 자구표현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3조는 조례의 불분명한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 안 제2조 : “보건·휴양·안전후생” → “보건·휴양·안전·후생”  
 “공무원” → “소속공무원”  
 “범위 내” → “범위”  
 “선택적복지제도 설계·운영시” →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 ※ 안 제3조 : “시장” →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휴직중” → “휴직 중”  
 “파견중” → “파견 중”  
 “이하 위원회”(큰따옴표 전후 띄어쓰기 오류) → “이하 “위원회””  
 “공무원에” → “소속공무원에”
- ※ 안 제4조 : “노력 하여야” → “노력하여야”

“직원후생복지” → “소속공무원 후생복지”

※ 안 제6조 :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 → “예산의 범위”  
“등의 확보 운영” → “등”

※ 안 제7조 : “직원” → “소속공무원”  
“시청매점” → “매점”  
“우수·효행공무원” → “우수·효행 소속공무원”  
“공무원” → “소속공무원”  
“직원” → “소속공무원”  
“소속 공무원” → “소속공무원”  
“출산직원” →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 안 제8조 : “운영 을” → “운영을”  
“제6조에서” → “제6조에”  
“제7조에서” → “제7조에”  
“안건” → “사항”

※ 안 제13조 :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 “후생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 조례의 용어 및 사업체계 등을 정비하여 각 조항의 내용과 실제 추진하는 사업을 연계하고, 용어·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 등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휴양·안전후생”을 “보건·휴양·안전·후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선택적복지제도 설계·운영시”를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직중”을 “휴직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건중”을 “과건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하“ 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에”를 “소속공무원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력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원후생복지”를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휴게실·구내식당·매점”을 “휴게실·구내식당·매점·카페·자동판매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무실·치과진료실·체력

단련실”을 “부속 의료기관·체력단련실·심리상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의 확보 운영”을 “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청매점”을 “매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우수·효행공무원”을 “우수·효행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출산직원”을 “출산한 소속공무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중 “소속공무원”을 각각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관리, 수리 등

나. 주택 임차보증금의 용자 및 이자 지원 등

#### 15.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제8조의 제목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 을”을 “운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6조에서”를 “제6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에서”를 “제7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안건”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

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후생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후생복지제도"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u>보건·휴양·안전후생</u>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p> <p>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u>범위</u>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p> <p>4. "복지포인트"란 <u>선택적복지제도 설계·운영시</u>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p> <p>② <u>시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보건·휴양·안전·후생</u> ----- ----- -----.</p> <p>3. ----- <u>소속공무원</u> ----- ----- <u>범위</u> ----- ----- -----.</p> <p>4. ----- <u>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u> ----- -----.</p> <p>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p> <p>1. -----</p>

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과건중인 공무원

3. (생략)

4.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  
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생략)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  
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  
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

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  
게실·구내식당·매점

----- 휴직 중-----

2. ---- 과건 중-----

3. (현행과 같음)

4. -----  
-----이  
하 "위원회"-----  
-----

③ -----  
-----  
----- 소속공무원  
에 -----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노  
력하여야 ----.

③ ---- 소속공무원 후생복지-  
-----  
-----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 예산의 범위-----  
-----  
-----.

1. ----- 휴  
게실·구내식당·매점·카페·자



가. 직원 후생복지용 아파트  
의 임대 및 관리

나. 주택 전세금의 용자

- 8.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상품권 제공 및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등
-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12. 소속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 13.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 14.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신 설>

가.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관리, 수리 등

나. 주택 임차보증금의 용자 및 이자 지원 등

- 8. -----  
소속공무원-----
- 9. 소속공무원-----  
-----  
--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  
-----
- 10. 소속공무원-----  
-----  
-----
- 11. 소속공무원-----  
-----  
-----
- 12. 소속공무원 -----  
-----  
-----
- 13. 소속공무원-----  
-----  
-----  
-----
- 14. 소속공무원 -----  
-----  
-----
- 15.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시  
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제6조에서 따른 후생복지시  
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따른 후생복지사  
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  
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  
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

## 종 지원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운영을 -----  
-----.

② -----  
-----  
-----.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  
-----

3. 제7조에 -----  
-----

4. -----  
-----

사항

<삭 제>

<삭 제>

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  
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법령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  
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  
장”이라 한다)은 후생업무를 주  
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  
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  
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  
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  
례」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  
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와 제9조  
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  
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신 설>

<신 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

제9조 (생략)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① -----

-----  
-----  
-----  
-----  
-----  
-----  
-----

후생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

② (현행과 같음)